

투자위험등급 :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 이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키움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1호[국공채]**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움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1호[국공채]**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키움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1호[국공채](36604) |
|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단기금융, 개방형, 추가형 |
|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02-789-0300) |
| 4.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
| 5. 작성기준일 | 2015년 09월 30일 |
|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년 10월 29일 |
|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총액: 10조좌] |
|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
| 9. 존속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
|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 |
| [투자설명서] | |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 |
|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 Tel. 02-789-0300, www.kiwoomam.com |
| 한국금융투자협회 | Tel. 02-2003-9000, www.kofia.or.kr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는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제1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계약 제17조에서 정의된 국공채, 양도성 예금증서 및 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주1)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 특성상 별도 비교지수는 없으나,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

아래의 투자대상은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으로 다른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투자대상 자산 등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의 투자대상에 운용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잔존만기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권(이하 “국공채”라 합니다). 다만, 환매조건부채권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 다. 특별법에 따른 특수공공법인 3. 증권금융회사 및 2.에 해당되는 기관 등이 발행한 잔존만기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및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4.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6.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 전자단기사채등 8. 환매조건부채도 9.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p>집합투자업자는 상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p>
투자대상자산의 제한 등	<p>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채무증권(법 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합니다)에 운용하여야 합니다.</p> <p>②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상을 다음의 자산에 운용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금 2. 국채증권 3. 통화안정증권 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양도성 예금증서·정기예금

구분	내용
	<p>나.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 · 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합니다) · 기업어음증권 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합니다) 라. 전자단기사채</p> <p>5. 환매조건부매수 6. 단기대출 7.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상을 다음의 자산에 운용하여야 합니다.</p> <p>1. ②의 1.부터 3.에 해당하는 것 2.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②의 4.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것 3. ②의 5.부터 7.에 해당하는 것</p> <p>④ 일시적인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으로 ② 및 ③에 따른 자산의 운용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회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그 비율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p>신용평가등급의 제한 등</p>	<p>①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전자단기사채 등 및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합니다.</p> <p>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②의 1.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합니다. 이하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에서 동일합니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p> <p>④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②의 2. 및 3.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p>

2.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 전략

- 국공채 및 신용등급이 우량한 양도성예금증서,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경제지표 및 종목 분석을 통하여 저평가 종목을 매수하여 추가 수익을 추구합니다.

2) 위험관리

- 법령에 의한 잔존만기, 신용평가 등급 및 분산투자 제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당사 고유의 투자가능 종목/수량 관리를 통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 유동성계약자산 보유비율 상한선 및 가용현금 보유비율 하한선을 정하여 유동성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3. 주요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 가능합니다.
-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아래 위험들은 일부 주요 투자위험만을 요약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히,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무증권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무증권등도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무증권등의 금리변동에 따라 채무증권등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신용등급 하락 혹은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편입한 채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변동은 없을지라도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인해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전체적으로 신용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될 경우 개별 종목의 신용위험 변동과는 별개로 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와와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국공채, 양도성 정기에금, 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 안정적인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나 시가평가형 채권 펀드보다 가격변동성에 노출될 위험이 적으므로 **5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낮은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낮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 경제여건 변화와 국내 국공채, 양도성 정기에금, 어음 등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국내 국공채 및 양도성 정기에금, 어음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다만 투자자산의 신용등급이 상위 2개 등급으로 제한되고 가중평균잔존만기는 75일 이내로 제한되며 장부가 평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이며, 단기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수익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원금이나 확정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시가와 장부가와의 괴리율이 0.5%를 초과하게 되면 시가평가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15.09.30. 현재)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책임운용 전문인력	문병석	1965	팀장	11개 (팀공동)	60,193억 (팀공동)	- 부산대 경제학과 - LG 투자증권 채권부/국제팀 - 현재 키움투자자산운용 단기상품운용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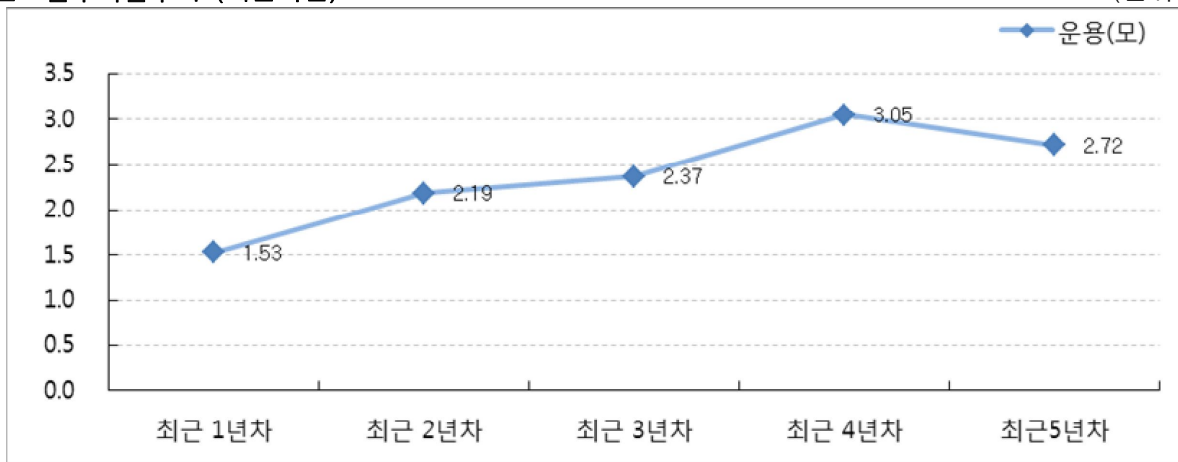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단기상품운용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도별수익률추이 (세전기준)

(단위: %)



기간	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14.10.01~ 2015.09.30	2013.10.01~ 2014.09.30	2012.10.01~ 2013.09.30	2011.10.01~ 2012.09.30	2010.10.01~ 2011.09.30
운용(모)	2003.04.07	1.53	2.19	2.37	3.05	2.72
비교지수		-	-	-	-	-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2부.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전환수수료	-	전환시
환매수수료	-	환매시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0930	매3개월/ 사유 발생시
판매회사보수	0.307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000	
기타비용	0.0067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4267	
증권 거래비용	0.0041	사유 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년도: 2014.04.07 ~ 2015.04.06]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년도: 2014.04.07 ~ 2015.04.06].
-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단위 : 천원)

구분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운용(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4	138	242	550

-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 주2)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후취판매수수료를 0%,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세

- 1)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기 세제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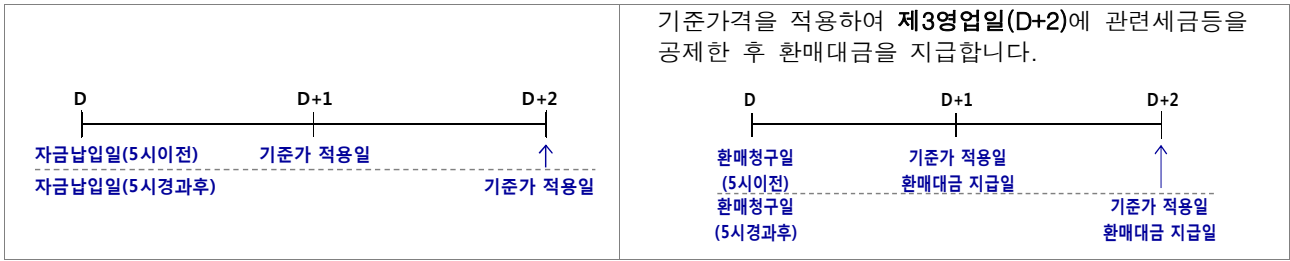
1)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2) 매입·환매 절차

매입	환매
①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①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D+1)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②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키움 프런티어 법인용 MMF 제1호[국공채]



제3부. 요약 재무정보

1.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12기 (2015.04.06)	제 11기 (2014.04.06)	제 10기 (2013.04.06)
운동자산	287,769,171,624	272,964,780,489	192,230,834,469
증권	265,258,142,641	262,964,451,785	184,166,541,074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2,511,028,983	10,000,328,704	8,064,293,395
기타 운동자산	0	0	0
기타자산	1,232,281,154	1,566,555,378	965,393,110
자산총계	289,001,452,778	274,531,335,867	193,196,227,579
운동부채	0	0	0
기타부채	0	173,227,776	109,508,418
부채총계	0	173,227,776	109,508,418
원본	0	268,372,964,707	188,015,143,191
수익조정금	0	743,804,249	315,114,053
이익잉여금	289,001,452,778	5,241,339,135	4,756,461,917
자본총계	289,001,452,778	274,358,108,091	193,086,719,161

손익계산서			
항 목	제12기	제11기	제10기
	(2014.04.07 ~ 2015.04.06)	(2013.04.07 ~ 2014.04.06)	(2012.04.07 ~ 2013.04.06)
운동수익	5,787,114,436.	6,269,574,403.	5,518,244,114.
이자수익	6,132,244,426.	6,403,206,756.	5,586,197,739.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수익(손)	-345,129,990.	-133,632,353.	-67,953,625.
기타수익	190,719,672.	0.	0.
운동비용	1,086,109,243.	1,012,016,778.	748,572,947.
관련회사 보수	1,075,491,305.	999,002,232.	748,572,947.
매매수수료	10,617,938.	13,014,546.	0.
기타비용	17,091,360.	16,218,490.	13,209,250.
당기순이익	4,874,633,505.	5,241,339,135.	4,756,461,917.
매매회전율	0.	0.	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